

복지카드 업무협약서

(개인형)

2016. 02. 15.

서울디자인재단, 이지웰페어, (주)우리카드, 비씨카드(주)

EZ WEL

BG CARD



복지카드 업무협약서

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회사”), 이지웰페어(이하 “시스템사”), 주식회사 우리카드(이하 “카드사”) 및 비씨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비씨”)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가 상호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전략적 업무제휴 및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제휴서비스 제공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가득한 할인 서울디자인재단 개인형복지카드”(이하 “카드”)란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가 상호 협의하여 “회사”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“회사”的 임직원 명의로 “카드사”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
- ② “제휴회원”(이하 “회원”)이란 “회사”的 직원 중 “회사”에서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받는 직원으로서 “카드”를 “카드사”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.
- ③ “제휴서비스”란 “회원”이 “카드사” 또는 “카드사”的 “가맹점”에서 “카드”를 사용할 때 이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④ “복지포인트”란 “회사”에서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복지후생금을 말한다.
- ⑤ “복리후생관”이란 “시스템사”가 “회사”에 제공하는 선택적복지제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.
- ⑥ “가맹점”이란 “카드사”와 “비씨”的 신용카드 가맹점과 “비씨” 회원사의 국내 가맹점 등을 총칭한다.
- ⑦ “복지가맹점”이란 “가맹점” 중 “회사”에서 직원에게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업종코드의 “가맹점”을 말한다.



卷之三

卷之三

제 3 조 (카드에 관한 업무제휴의 범위)

① “회사”와 “카드사”는 다음의 업무범위에 대해 제휴한다.

1. “회원” 모집 및 “카드” 발급에 관한 사항
2. “카드” 디자인 및 관련 인쇄물 제작에 관한 사항
3. “회원”에 대한 “카드사”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4. “회사”와 “카드사” 상호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
5. 기타 “카드”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

② 제 1 항의 제 1 호, 제 3 호, 제 5 호의 업무는 “카드사”가 담당하며, 제 2 호, 제 4 호의 업무는 “카드사”와 “회사”가 공동으로 담당한다.

③ 제 1 항에서 정한 업무제휴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카드사”와 “회사”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 4 조 (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의 범위)

① “회사”와 “시스템사”는 “회원”이 “복리후생관”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범위에 대해 제휴한다.

1. “복리후생관”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“복지포인트”的 관리
2. “복리후생관”的 복지를 서비스(이하 “시스템사 복지몰”) 제공 등

② 제 1 항에서 정한 “복리후생관”的 업무는 “회사”와 “시스템사”的 별도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“복리후생관”的 운영 및 관리는 “시스템사”에서 담당한다.

③ 제 1 항에서 정한 업무제휴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회사”와 “시스템사”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제 5 조 (카드의 발행)

① “카드사”는 “회사”로부터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받는 직원이 “카드” 발행을 요청한 경우 “카드사” 내부규정에 따라서 “카드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“카드”를 발행하며,
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
- 이때 “카드사”가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받는 직원임을 확인 요청하면, “회사”는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받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“카드사”에 제공해야 한다.
- ② “카드”의 디자인은 “카드사”와 “회사”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, 기재사항은 “카드사”, “비씨”, “국제카드(비자카드 등)사”의 규격 및 형식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동 명칭이 타인의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제 2 항에 의하여 변경요청을 받은 당사자중 일방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제 3 항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, 변경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대방은 변경요청을 한 당사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회원 모집)

- ① “회원”의 모집은 “회사”와 “카드사”가 상호 협조하여 추진한다.
- ② “회사”가 직접 “회원”에게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회수하여 “카드사”에 제출할 경우, “회사”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”와 “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에 한함)사본을 “카드사”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분실, 본인확인 등으로 문제 발생시 책임은 “회사”에 있다.
- ③ “회원”의 모집 대상은 “회사”에서 “복지포인트”를 지원받는 직원으로 한정한다.
- ④ “카드사”에 접수된 신청서는 “회사”에게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⑤ “회사”와 “카드사”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7”의 신용정보 보호 조항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“카드”的 이용한도)



- ① “회원”의 이용한도는 “카드사”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된다.
- ② 일시적인 이용한도 증액의 최고한도, 적용기간 등의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“카드사”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8 조 (“복지포인트” 한도)

- ① “회원”의 “복지포인트” 한도는 “회사”가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“회원”의 “복지포인트” 한도는 “회사”에서 “시스템사”에 통보하고, “시스템사”는 이를 “복리후생관”에 반영한다.

제 9 조 (“복지가맹점” 업종코드)

제 2 조 제 7 항에서 정한 “복지가맹점” 업종코드는 “회사”에서 정한다. 이 경우 “회사”는 가맹점 업종코드의 지정을 “시스템사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시스템사”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“카드사”가 제공하는 “카드” 서비스)

“회원”은 “가득한 할인 카드”를 복지비 신청카드로 사용하며, “카드사”는 “가득한 할인 카드”的 모든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(2014년 08 월 26 일 기준)를 동일하게 제공하되, Two-in-one 결제 서비스는 제외한다.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“카드사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제 11 조 (연회비 우대 서비스)

- ① “가득한 할인 서울디자인재단 개인복지카드(신용)”는 국내외 겸용카드이며, 연회비는 Union Pay : 5,000 원이다. “카드사”는 “회원”에게 ‘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’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청구한다.
- ② 2~5년차 연회비는 면제한다.
- ③ “가득한 할인 서울디자인재단 개인복지카드(신용)”는 “회원”的 다른 카드의 연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2 2 2 2 2 2 2 2

④ “카드사”는 연회비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“회사”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.

제 12 조 (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범위 및 역할)

- ① “시스템사”는 “카드사”的 “카드”와 연계한 “복리후생관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.
- ② “카드사”와 “비씨”는 “복리후생관”과 “카드”가 연동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“시스템사”와 합의한 조건으로 최대한 협조한다.
- ③ “시스템사”는 “카드사”, “회사”와 정한 정보제공 기준에 따라, “비씨”로 “회사”에서 정한 복지 가맹점에서 회원이 사용한 카드의 정보제공을 “CI+ 제휴코드 기준”으로 요청한다.
- ④ “비씨”는 “시스템사”的 요청에 근거하여, 회원이 사용한 카드의 매출정보를 제공한다.

제 13 조 (“복지포인트” 결제 및 정산)

“회원”은 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연중 제한없이 “카드”를 사용할 수 있으며, “회사”는 “회원”的 이용금액에 대하여 매 월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간의 상세 정산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시스템사”는 “비씨”에게 “회원”的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한다.
- ② “비씨”는 “시스템사”에서 요청한 “회원”的 카드사용 내역을 “시스템사”에 제공하여 “시스템사”的 복지시스템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③ “시스템사”는 “회원”이 복지가맹점에서 사용한 “카드” 사용 내역 중 복지포인트로 충당하고자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환급 신청하여 “시스템사”가 승인한 “회원”별 내역을 매월 10일(해당일이 금융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까지 “비씨”에 제공하고, “비씨”는 위 정보를 “시스템사”로부터 수신한 당일에 “카드사”에 제공한다.
- ④ “회사”는 “회원”들이 “시스템사 복지몰”에서 “복지포인트”로 결제할 것을 신청하여 “시스템사”가 승인한 금액은 “시스템사”가 지정한 계좌로, “시스템사복지몰” 이외의 복지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 중 “회원”들이 전 항에



卷之三

三
二
一

의하여 환급신청한 “카드” 사용 내역의 합계액을 “복리후생관”을 통해 확인하여 매월 14 일(해당일이 금융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 오전)까지 “우리은행”의 “회사”명의의 계좌(“회사”에서 “카드사”에 공문으로 통지한다.)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⑤ “카드사”는 “시스템사”로부터 각 “회원”들이 복지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 중 복지포인트로 충당하고자 “회원”들이 환급신청한 “카드” 전문을 수신하여 동 사용내역 상당액을 매월 15 일(해당일이 금융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제 4 항에 규정된 “회사” 명의의 계좌에서 “회사”의 별도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각 “회원”的 “카드” 결제계좌로 자동이체 처리한다. 이체 오류건에 대해서는 “회사”에서 “회원”에 별도로 입금처리한다.



⑥ 제 5 항에 의해 “회원”的 “카드” 결제계좌에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이후에는 “복리후생관”을 통한 복지포인트 적용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⑦ “회사” 또는 “회원”이 복지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“시스템사”와 “카드사”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“회사” 또는 “회원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회원 정보의 관리 및 처리)

- ① “회사”는 “회원”的 복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“시스템사”와 “카드사”에 제공한다.
- ② 복지이용과 관련된 제반정보는 “시스템사”가 관리한다.
- ③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포함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한다.
- ④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“회원”的 인적 사항과 카드번호 등의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, “시스템사”는 본 협약 종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기 제공받은 “카드”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.



—
—
—

A 4x10 grid of 40 small, light-colored circles arranged in four rows and ten columns.

- ⑤ “시스템사”는 “회원”에 한하여 타 신용카드업자와 “시스템사 복지몰”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를 할 수 없으며,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“회원”的 동의없이 본 협약에서 제공받은 “회원”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⑥ 제 3 항 내지 제 5 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·형사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위반한 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 15 조 (비밀유지 의무)

- ①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(제 3 자에 대한 정보 포함),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, 해지,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.
- ③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 또는 비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 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사후관리)

- ①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는 “회원”들에게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“회원”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“회원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對 “회원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③ 원인 규명 후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전액 배상한다.

제 17 조 (협약의 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)



卷之三
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三三三三

이 협약은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가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 다만 본 협약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的 협약조건 및 협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서면 이의가 없거나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이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(협약서의 내용과 기간)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.

제 18 조 (협약의 변경)

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.

제 19 조 (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- ①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다른 당사자들 모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 전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1. 이 협약서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하여 위 협약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
 2.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3.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협약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4.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 5.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



100

제 22 조 (협약 해지시 카드의 기능)

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“회원”에게 “카드”的 유효기간 동안 “카드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 협약은 “회원”에게 “카드”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

제 23 조 (손해배상)

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(“회원”을 포함한다)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. 단, 손해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“회사”는 협약기간 중 “카드사”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과 본 협약과 유사한 복지카드 또는 단체(패밀리)카드 협약을 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해 “카드사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.

제 24 조 (불가항력)

전쟁, 폭동, 내란, 천재지변, 법령의 제정·개폐,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휴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본 협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.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, 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 25 조 (신의 성실의 의무)

본 협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하며,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양도금지)



卷之三

卷之三

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는 다른 당사자들 모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, 증여, 하도급, 복위임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27 조 (협약의 해석)

본 협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,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제 28 조 (관할 법원)

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법률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.





10.00

10.00

상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4 부 작성하여 “회사”, “시스템사”, “카드사” 및 “비씨”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02월 15일



“회사”

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

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

이근(인)



“시스템사”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7-10

이지웰페어 주식회사

대표이사

김상용(인)



“카드사”

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

주식회사 우리카드

대표이사

유구현(인)



“비씨”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

비씨카드 주식회사

대표이사

서준희(인)



12 -

00 01

10.00

10.00

복지카드 추가 협약서

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회사”)과 주식회사 우리카드(이하 “카드사”)는 2014년 8월 26일 협약한 복지카드 업무협약서상의 제10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여 약정하며, 그 효력은 2014년 8월 26일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— 다 음 —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10조	<p>“회사”은 “PEW우리카드”를 복지비 신청 카드로 사용하며, “카드사”는 “PEW우리카드”의 모든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되, Two-in-one 결제서비스는 제외한다.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“카드사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</p>	<p>① (좌 등)</p> <p>② “카드사”는 계약기간 동안 복지카드 국내 사용판매 금액(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제외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제외, 국외이용액제외, 연체금액 제외)의 영점영업퍼센트(0.01%)를 발전기금으로 “회사”에게 지급하며, “카드사”는 “회사”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년 2월말(전년도 1월~12월 이용액)발전기금을 일정액으로써 지급에 활용한다</p>

상기 추가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지카드 추가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“회사”와 “카드사” 양사가 기명捺印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15일

“회사”

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

(종로6가, 서울디자인지원센터)

대표이사 이근 (인)



“카드사”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7길 50

(중학동, 더케이트워크 A동)

대표이사 유구현 (인)



